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5036    |
| 의 퇴 인  | 최혁진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2.12. |
| 추 계 번호 | 25D6794    |

#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각급 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억 7,800만원씩 5년간 총 8억 8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 | 178  | 178  | 178  | 178  | 178  | 888 | 17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99조의2<br>(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관한 예외) | 인권, 국민의 건강과 안전, 소비자의 권익 또는 환경보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송비용 감면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함)을 둔다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원장은 법원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구분에 따라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함(제6항)<br>- 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<br>-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<br>-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<br>-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99조의2(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관한 예외) | 0    | 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소송비용 감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함)의 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  - 2026년 기준 각급법원(고등법원, 특허법원, 지방법원, 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)의 수는 37개이고, 개정안에 따라 각급법원마다 자문위원을 위촉함
  - 안 제99조의2 제6항에 따르면,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위촉되며, 이 중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외부위원은 6명임
    - － 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
    - －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4급 이상의 고등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(외부위원)
    - － 각급 법원 소재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(외부위원)
    - －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(외부위원)
- 자문위원회 회의는 연간 공익소송 제기 건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분기별로 1회,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 - 참고로 2020년 기준 민사소송 건수는 480만건이고, 이 중 소송비용 확정 신청 사건 건수는 4만 3,641건임<sup>1)</sup>
-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대법원의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<sup>2)</sup>에 따라 20만원으로 추계기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

1) 파이낸셜뉴스 2022년 1월 12일, “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 바꿔야..재판 청구권 제한”

2) 「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」 제2조(참석수당) ① 대법원(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 포함)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(연구반, TFT등 포함,

으로 가정함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문위원회의 외부위원 인원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- 개정안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수는 총 222명이고, 자문위원 1명당 연간 회의참석 횟수가 4회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억 7,800만원씩 5년간 총 8억 8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| (단위: 명, 회, 백만원)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 연평균 |
| 전체 민간위원 수<br>(명, A)              | 222  | 222  | 222  | 222  | 222  | -   | -   |
| 자문위원 1명당 연간<br>회의참석 횟수<br>(회, B)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-   | -   |
| 회의참석수당<br>단가(백만원, C)             | 0.2  | 0.2  | 0.2  | 0.2  | 0.2  | -   | -   |
| 추가재정소요<br>(백만원, D=A×B×C)         | 178  | 178  | 178  | 178  | 178  | 888 | 17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이와 같다)에 참석한 위원(연구보원, TFT팀원 등 포함,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1일당 150,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  
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.

다만,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4회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공익소송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 개최횟수가 달라질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임지원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임지원 | 02-6788-4664 | img1@assembly.go.kr |